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보도	2019.2.13.(수) 조간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가계금융과장 박 주 영(02-2100-2510)	담 당 자	윤 영 주 사무관 (02-2100-2511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 :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

◆ **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 이자율 + 3%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**

1 추진 배경

□ 대부업법 개정('18.12.24 공포, '19.6.25 시행)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됨*

*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·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(대부업법 §15③)

-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,
-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%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*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

*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(%): ('17.6말) 19.7 → ('17.12말) 23.6 → ('18.6말) 27.0

⇒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

2

주요 내용

□ **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**
(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가산이자율의 차이)의 **상한을 연 3%로 규정**

○ 은행·보험·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'18.4.30일 금융위 고시
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%*로 결정

* '18.1.18. 既 발표한 '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' 후속조치

□ **대부업체 연체가산이자율 제한** 규정은 입법예고(2.13~3.25), 법제처
심사, 차관·국무회의 등을 거쳐 '19.6.25일에 공포·시행할 계획

○ 이를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
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